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신고절차 안내

문진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수의연구관
moonjs727@korea.kr



문진산, 김충현,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2011년 수의사법 개정에 의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가 처음으로 적용된 이래 2014년에는 3년이 되어 많은 동물병원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검사받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기간은 이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기관 지정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에서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 종사자 실태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및 신고절차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주요 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동물병원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따라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을 방사선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제정되어 2011.1.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해왔던 동물 진단

용 방사선발생장치(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x-ray),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관할 시군에 5월 31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안전관리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현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 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 사진 관찰대 등 동물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사선 방어시설(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이용 기구)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 검사기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검역원장이 지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 시 및 이후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내지 100만원, 검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

선 안전관리책임자(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량 사용량이 주당 최대동작부하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 건강검진의 의무 등을 면제하여 소규모 동물병원의 부담 경감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련 그간 추진사항

- 「수의사법」 개정(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및 피폭관리 등) : '11.1.26 시행
- 농림수산물부령 및 검역원고시 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식품부령) 제정 : '11.1.26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정 : '11.3.9
- 검사 및 측정기관(방사선 안전관리) 지정(10개소) : '11.6월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실무편람 제작·배포(지자체 등 700부) : '11.6.2
 - 방사선 발생장치·방어시설 및 관계 종사자 신고 방법 등 설명자료
-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 설치(검역원) : '11.8월
- 미표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표시방법 알림 : '11.10월
- 검사 및 측정기관(방사선 안전관리) 추가 지정(3개소) : '12~'13년
- '12년 검사 및 측정기관 정기 점검(10개소) : '12.9월
-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12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12.9월,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조사 : '13.6월
-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보고('13.7월, 농식품부)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표시 추진 등 공문시행('13.7월, 지자체)
- '13년도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13.10월, 대한수의사회)
- 13년 검사 및 측정기관 정기 점검(5개소) 실시 : '13.11- '13.12월

3. 동물 진단용 방사선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현황

1)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측정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 및 측정기관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업소, 그 교정업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그 밖에 검역원장이 검사기관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지정기준은 검사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추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의 시험 항목 및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의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측정·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기준장비와 검사용 장비를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책임자(1)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전기학·전자학·기계공학·방사선학·의공학·원자력공학이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의 1)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방사선사)를 갖추고, 1년 이상 실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상용 종사자 2명 이상을 1개 팀으로 하여 2개 팀 이상의 검사 인력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측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방사선 분야)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원자력법」 제90조의4에 따라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으로서 관리책임자와 2명 이상의 측정인력을 상용 종사자를 확보해야 한다.

2) 검사·측정기관 지정 현황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기관 지정 현황은 <표 1>과 같다. 2013년을 기준으로 검사기관은 7개소, 측정기관은 5개소가 각각 지정되었으며, 이중 검사기관 1개가 2013년에 폐업 신고하여 현재는 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정된 모든 검사 및 측정기관은 인체에도 등록된 기관이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측정 기관명 및 연락처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검사기관과 측정기관 현황 ('13. 12월말 기준, 개소)

구분	지정(폐업) 현황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검사기관	5	1	1(1)	7(1)	2013년에 1개소 폐업
측정기관	5	-	-	5	-

<표 2>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FAX
제2011-1호	육군 제2879부대	-	-	-	-
제2011-2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KT&G 빌딩 3층	134-030	1577-2720	02)470-3767
제2011-3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E동 301호	463-760	031)780-2377	031)780-2388
제2011-5호	한국의료기기검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남로 230 D동 310, 311호	463-760	1588-4816	031)701-8917
제2012-2호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64(금석빌딩)	151-825	1577-1631	02)874-0700
제2013-1호	중앙기술검사원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번지남운프라자 1701, 1709호	680-806	052-254-4104	052-254-4204

※ 육군 제2879부대는 자체검사 기관으로써 동물병원에 서비스하지 않음.

<표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FAX
제2011-1호	(주)오르비텍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가산디지털엠피아 8층	152-050	070-4044-8800	070-4302-1900
제2011-2호	서울방사선서비스(주)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81-26	131-121	02)433-2583	02)439-6552
제2011-3호	한일원자력(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2-4 동영벤처스텔 301호	430-017	031)443-4284	031)443-4289
제2011-4호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경기 화성시 석우동 19-13	152-055	031)613-0975 (내선202)	031)613-0976
제2011-5호	라드인(주)	대전시 서구 변동 71-54 2층	302-838	042)528-5586	042)523-5586

3) 검사 및 측정기관 정기점검

2012년에는 지정된 모든 기관(10개소)과 2013년에는 2012년 지정된 검사기관 1개소를 포함하여 2012년에 지적된 4개소 총 검사기관(3개소) 및 측정기관(2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의 검사능력과 시험장비의 정밀도 등 검사·측정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에는 검사지연 안내문 미발송, 상용종사자 교육 미실시(개선명령 2건) 및 자체운영규칙, 접수대장·공문서철 기록·관리보완 등(현지시정 3건)이 지적되었다. 2013년의 경우에는 2012년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 개선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관련 종사자 현황

201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동물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총 2,030개로 신고되었다<표 4>. 그중 엑스선장치(x-ray 등)는 2,015대, 단층촬영장치(CT)는 15대였으며, 이 중 미표시 장치는 389대(20%)로 보고되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545명 이었으며, 이중 수의사 2,391명, 기타는 154명으로 신고되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는 1명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피폭관리는 169명(6.6%)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방사선발생장치 미표시 장치(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본체에 모델명, 형식, 제조번호의 표시가 없거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구성품 중 고전압발생장치, x-선 튜브, 제어장치의 모델명 표시가 없는 장치를 보유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본체 및 구성품의 모델명 등을 표시(스티커는 본체 및 구성품의 정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동봉된 비닐스티커로 덧붙임이고 설치(사용) 신고 시, 시·군·구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스티커 부착)토록

시·군·구에 개선 조치 공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노후화 등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폐기토록 유도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정하는 직원 포함)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조치하였다.

〈표 4〉 2013년 전국 동물병원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현황 <'13. 3. 31일 기준〉

구분	방사선발생장치(개)				방사선 관계 종사자(명)				비고
	전체	미표시	엑스선 장치	단층 촬영장치	전체	피폭관리	수의사	기타	
서울	650	107	643	7	824	88	806	18	*장치 -2,023개 적합 -장치7개 (검사중) · 파주5 · 음성1 · 예천1 *피폭관리 -초과자 없음
부산	145	31	144	1	165	5	160	5	
대구	99	10	99	-	127	5	111	16	
인천	104	23	104	-	136	-	112	24	
광주	55	11	54	1	70	5	69	1	
대전	64	17	63	1	112	6	91	21	
울산	49	8	49	-	76	-	59	17	
세종	2	-	2	-	3	-	2	1	
경기	504	101	504	-	609	8	578	31	
강원	46	8	44	2	52	3	49	3	
충북	47	4	46	1	60	9	58	2	
충남	39	3	39	-	51	4	46	5	
전북	33	7	32	1	51	15	45	6	
전남	20	11	20	-	23	5	21	2	
경북	61	13	61	-	63	3	62	1	
경남	83	28	82	1	92	6	91	1	
제주	29	7	29	-	31	7	31	-	
합계	2,030	389	2,015	15	2,545	169	2,391	154	

※ 동물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포함하지 않음.

1) 미표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장치

2) 피폭관리 :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10mA·min/week 이상인 장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피폭선량 측정 대상이 되는 종사자

또한, 2012년 9월과 2013년 10월에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불필요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방사선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제도, 진단용 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이다.

5.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조치사항

1) 최초 사용신고서

□ 신고전 준비사항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 검사신청서 양식 :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제품품목신고, 수입품목 신고를 할 때에 같은 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

-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신고 절차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시·군·구청(동물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1)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각각 사본 1부씩
- (2)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강진단표 첨부)

2) 사용중 관리요령

(1) 방사선 구역 표시

☞ 주당 최대 동작부하량이 10mA·min이하일 경우에는 방사선구역 표시, 피폭선량 측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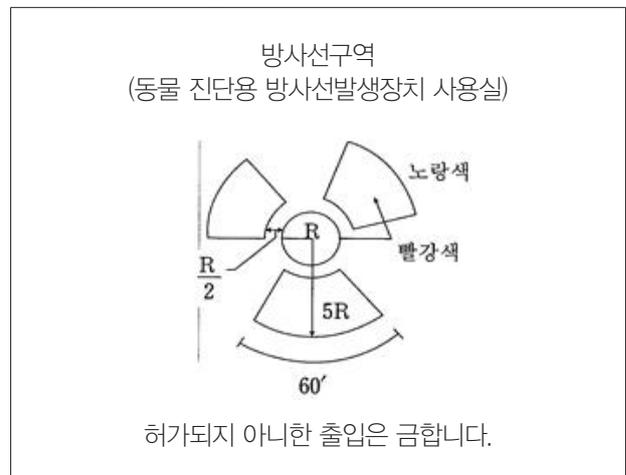
※ 주당최대 동작 부하량은 연중 방사선발생장치를 가장 많이 사용한 1주 동안의 동작 부하량의 합을 말한다(예시: 1주간 5mAs로 120회 촬영하였다면 600mAs(=10mA·min)).

※ 주당최대 동작 부하량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에 앞서 받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시 산정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구역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별표5의 방사선구역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제9조).

- 방사선구역 :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4mSv(4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erk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

방사선구역 표시 도안



R=2.5cm 이상

(2) 피폭선량 측정

☞ 주당 최대 동작 부하량이 10mA·min이하일 경우 미 적용 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측정기관을 통해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제6항)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측정기관에 측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 한 후 측정성적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측정검사 : 티·엘배지는 3개월 마다,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검사

측정결과 선량한도(별표3)가 초과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경우 즉시 건강진단(별지 제18호서식)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안전조치 : 선량한도 초과자의 근무지 변경 또는 근무시간 단축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없으면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조치를 해제 요구한다.

(3)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주당 최대 동작부하량이 10mA·min이하일 경우 미 적용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사인 경우 자신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제10조 및 제11조).

-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 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1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와 해당자의 자격증명 서류사본, 건강진단표(별지 제18호서식)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되면 1년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단체(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교육받아야 한다.

(표 5)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조치사항

구분	조치내용	관련기관	적용배제	관련조항
설치신고	설치 3일전까지 신고 - 장치 검사 성적 - 시설 검사 성적 - 관계 종사자 - 양도/이전 증명서(양도/이전설치 시) - 사용중지신고서(사용중지 후 재사용 시)	시·군·구에 신고		3조 1항
사용중지 및 양도·폐기·이전 시 등 신고	1. 사용중지 시 3일 이내 2. 양도/폐기/이전 시 45일 이내 - 신고 증명서 원본 - 관련사실 증명서 3. 관계종사자 변경 시 3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 사본	시·군·구에 신고		3조 2항 3조 5항
	1. 신규설치 및 이전 설치시 2. 매 3년마다 재검사 3. 아래 해당하는 경우 별도 추가검사 - 전원시설 변경시 -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시 - 주요장치 수리 및 교체시		검사기관	4조 1항 4조 3항
검사 및 측정	방어시설 검사	검사기관		4조 4항 4조 5항
	방어시설 검사	검사기관		4조 4항 4조 5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 모두 측정 - 열형광선량계 사용시 3개월마다 - 필름배지 사용시 1개월마다	측정기관	○	4조 6항
방사선구역	방사선구역설정 및 표시 및 일반인 출입제한	자체적	○	9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중 선임(개설자 본인 겸업 가능)	시·군·구에 신고	○	10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선임 후 1년 이내	검역본부장 지정 단체(수의사회)	○	15조
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1. 관련 업무에 최초 종사 2. 매 2년마다		○	13조
서류작성 등	별표6의 서류 작성·비치			14조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

☞ 주당 최대 동작부하량이 10mA · min이하일 경우 미적용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2년마다 건강진단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하여야 한다(제13조).

(5) 관련서류 작성 및 비치

동물병원 개설자는 별표6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제14조).

-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 : 1년
-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해당 종사자 퇴직시까지(퇴직시 당사자에게 발급)
-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 기록 : 해당장치의 철거후 1년
-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 : 해당 시설의 철거 후 1년
-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등) : 5년
- (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별지 제3호) : 해당 장치의 철거 후 1년
- (6)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재검사

동물병원 개설자는 최초 검사 이후 3년 마다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동물병원 개설자는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제4조제5항)

3) 사용 중단(양도, 폐기, 이전 등) 신고

(1)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 원본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시에만 적용)

(2)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시에만 적용)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시에만 적용) 